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5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진중오 · 고동진 · 정성국
엄태영 · 강선영 · 서천호
박정훈 · 김용태 · 김미애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3호”를 “제13호, 제13호의2”로 한다.

1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죄

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의 죄

제46조제2항제2호 중 “범무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항제13호의2가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1항제13호의2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퇴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 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 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u> <u>가. 「형법」 제2편제1장 내</u> <u>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u> <u>죄</u> <u>나. 「형법」 제2편제24장 살</u> <u>인의 죄, 제32장 강간과</u> <u>추행의 죄 및 제38장 절도</u> <u>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u> <u>죄</u> <u>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u> <u>(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u> <u>의 성폭력범죄</u> <u>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u> <u>률」 제58조, 제58조의2,</u>

	<u>제59조부터 제61조의 죄</u> 마.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 <u>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죄</u> 바. 「<u>국가보안법</u>」 <u>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u> 사. 「<u>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u>」 <u>제4조의 죄</u> 아. 「<u>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u>」 <u>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의 죄</u>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u>제13호</u>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5. ----- ----- ----- <u>제13호, 제13호의2</u> -----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1. (생 략)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 람 중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u> 사람 <u><신 설></u> <u><신 설></u>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 -----<u>다음 각 목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u>가. 제1항제13호의2가목에 준</u> <u>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u> <u>으로 정하는 사람</u> <u>나. 제1항제13호의2나목부터</u> <u>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	---